

 국토교통부	<h1>보 도 자 료</h1>		<small>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</small> 보다 나은 정부
	배포일시	2019. 8. 8(목) 총 8매(본문 7매, 참고 1매)	
담당 부서	자동차정책과	담당자	· 과장 윤진환, 사무관 김영건, 주무관 박성준 · ☎ (044)201-3835, 3840, 3841
보 도 일 시		2019년 8월 8일(목) 11:00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8월 8일(목) 석간 보도 가능	

자동차 튜닝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.

-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 발표 -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8월8일 제8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(국무총리 주재)에서 튜닝규제 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, ‘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’을 발표하였습니다.
 - 이번 대책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튜닝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규제로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자동차안전을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튜닝규제는 획기적으로 완화하여 튜닝시장을 활성화하고,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.
 - 특히, 지난 5월부터 튜닝업계·전문가·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제 튜닝현장에서 잘 운용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를 만드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.
- ‘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< 1. 튜닝규제체제 혁신 >

① 금지사항 허용, 사전 승인대상 축소

- △ 승용·화물·특수차도 캠핑카로의 튜닝허용
- △ 화물차 ↔ 특수차 간 차종 변경 튜닝 허용
- △ 등화, 제동 등 8개 장치의 튜닝승인은 면제하고 튜닝검사만 실시

□ 최근 캠핑카가 아닌 자동차를 캠핑카로 튜닝하고자 하는 수요가 급증*하고 있으나, 현행법상 캠핑카가 승합자동차(11인승 이상)로 분류되어 있어 승합자동차가 아닌 승용·화물차 등은 캠핑카로 튜닝이 어렵습니다.

* '19.3월 기준 전체 캠핑카 수는 20,892대로 '14년 대비(4,131대) 약 5배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, 이중 튜닝카 비중이 약 30%로 매우 높은 상황
(튜닝캠핑카 수('14년부터 튜닝허용) : 125('14) → 1,178('16) → 5,726('18) → 6,235('19.3))

- 앞으로는 승합차가 아닌 승용·화물·특수 모든 차종에서 캠핑카 튜닝이 가능하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.
- 이를 통해 연간 6천여 대, 약 1천 3백억원 규모의 신규 튜닝시장 창출이 기대됩니다.



□ 소방차, 방역차 등 특수자동차의 경우 사용연한이 지난 이후에도 화물차로 튜닝하면 충분히 재사용이 가능하나, 그간 안전성 우려 등으로 인해 금지해 왔습니다.

- 양 차종은 기본적으로 차체와 안전기준 등 유사한 부분이 많고, 튜닝수요도 높은 점을 감안하여 화물차·특수차 간 변경튜닝을 허용하되,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엄격하게 검사하여 안전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.
- 연간 약 5천여 대, 약 2천 2백억원 규모의 신규 튜닝시장 창출이 기대됩니다.

□ 동력전달장치, 등화장치 등 8개 장치는 그간 튜닝승인 대상이었으나, 튜닝이 정형화되어 있고 안전문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, 앞으로는 튜닝 사전 승인은 면제하되 안전성 보완차원에서 튜닝 검사만 시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.

○ 튜닝검사 절차를 마련하여 '20년부터 '21년까지 단계별로 시행할 계획으로 연간 총 튜닝건수 약 16만여 건 중 44%인 약 7만 1천여 건이 승인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단계	구분	주요 항목	비고	
1차 (20년)	물품적재장치	픽업덮개 설치(나머지는 승인 유지)		
	원동기/동력전달장치	자동·수동변속기 등(원동기는 제외)		
	등화장치	안개등, 경광등, 주간주행등		
	소음방지장치	튜닝머플러 등		
2차 (21년 이후)	원동기/동력전달장치	원동기교환, 터보차져(T/C), 인터쿨러(I/C), 에어크리너 등		
		실린더블록교환, 저공해가스(LPG,CNG) 엔진변경		
	조향장치	조향장치 위치변경, 핸들변경		
	제동장치	디스크 등		
	연결 및 견인장치	트레일러 힌치, 핀틀후크 등		
	배기가스 발산방지장치	배출가스저감장치 등		

② 튜닝 승인·검사 예외사항 확대

△ 전조등 변경, 플라스틱 보조범퍼 설치 등 27건에 대해 튜닝 승인·검사 면제

□ 그간 튜닝 승인대상 중 59건의 경미한 사항들에 대해서만 승인과 검사를 면제하였으나, 튜닝현장의 의견 수렴, 교통안전공단의 안전성 검토를 거쳐 승인·검사 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 하였습니다.

- 앞으로는 전조등 변경, 플라스틱 보조범퍼 설치, 환기장치 설치 등 27건에 대해서도 별도의 승인과 검사가 면제됩니다.
- 이를 통해, 연간 약 2만여건(총 건수 대비 약 12% 수준)의 튜닝승인·검사가 면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- (①전조등 변경) 자기인증된 전조등은 승인면제(예 : 페이스리프트 전조등 사용)

* (기존) 자기인증한 등화장치는 전조등만 제외하고 승인면제



- (②플라스틱 보조범퍼) 설치시 길이 범위를 초과 할 수 있으나 안전확보에는 문제가 없음



- (③환기장치, ④무시동히터 및 ⑤무시동에어컨, ⑥태양전지판) 중량허용 범위내에서 설치되는 경우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 면제



- (⑦동력인출장치*, ⑧BCT 공기압축기**) 특수 차량의 작업 등 편의 도모를 위해 면제

* 변속기의 동력을 인출하는 장치

** 변속기 동력을 이용해 공기 압축기 작동



- (⑨소음방지장치) 자기인증된 소음방지장치 및 튜닝장치의 원형 변경은 승인면제



- (⑩캘리퍼 및 부속장치) 기존에는 자기인증된 캘리퍼만 면제하였으나, 설치시 함께 변경이 필요한 브라켓 등 부속장치도 포함



- (⑪연결장치) 자기인증한 연결장치 사용시 면제
* 캠핑용 트레일러 등 다른 차량을 견인시 사용



- (⑫화물자동차 적재함 내부칸막이 및 선반)

- (⑬픽업덮개 제거 및 화물차 난간대 제거)



- (⑭경광등 제거) (⑮픽업형 난간대) 설치·제거



* ⑯~⑳번은 기존에도 승인면제이나 너비·높이 기준 추가완화

- (⑯루프캐리어, ⑰수하물운반구, ⑱안테나)



- (⑲자전거캐리어, ⑳스키캐리어, ㉑루프탑바이저*)

* 공기저항 감소 목적



- (㉒보조발판*, ㉓컨버터블탑용롤바**, ㉔유리운송지지대)

* 보조발판은 최외측부터 좌우 각각 50mm이내

** 차량 전복시 차체 훼손 방지용



- (㉕루프탑텐트, ㉖어닝*) * 캠핑시 그늘막



- (㉗교통단속용 적외선 조명장치)

3 튜닝인증부품 확대

- △ 자기인증대상 부품도 튜닝인증부품으로 허용
- △ LED 광원, 조명휠캡, 중간소음기에 대해 튜닝부품으로 인증

□ 안전이 검증된 튜닝부품은 승인없이 바로 장착할 수 있도록 튜닝 부품인증제도를 시행중이나, 품목이 5개에 불과한 상황입니다.

* 조명앰블럼, 소음기, 주간주행등, 브레이크캘리퍼, 영상장치머리지지대

- 이에, 자기인증대상 13개 부품(전조등, 휠 등)도 튜닝인증부품으로 허용하고, LED 광원(전조등)·조명휠 캡, 중간소음기 3개 품목에 대해서는 튜닝부품으로 신규 인증할 계획입니다.



< LED 광원(전조등) >



< 조명휠 캡 >

- 특히, LED 광원은 금년 내 시장에 출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, 연간 120억원 규모의 튜닝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

4 소량 생산자동차 규제완화

- △ 충돌 및 충격시험 등 안전기준 일부 면제
- △ 소량 생산자동차의 생산대수 기준 완화(예시 : 100대 → 300대) 등

□ 소량생산자동차의 생산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양산차와는 별도의 인증제를 '15.12월 도입했으나, 완화된 인증기준도 상당한 비용이 발생되고 세부 인증기준도 미흡하여 그간 인증 사례가 없었습니다.

- 이에, 해외사례 등을 고려하여 충돌·파괴시험 등의 안전기준을 면제하고 세부 인증기준도 마련할 계획입니다.

- 아울러, 그동안 100대 이하의 차량을 생산하는 경우에만 소량생산 자동차 별도 인증제를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, 적용기준을 대폭 완화(예시 : 100대 → 300대)하여 소량생산자동차 생산이 활성화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.

< 2. 튜닝 지원기반 마련 >

△ 전기장치, 이륜차 튜닝승인 기준 정비, △ 튜닝카 성능·안전 시험센터 건립, △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프로그램 마련

- 최근 전기차 증가에 따라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차로 튜닝하려는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하여 그간 세부기준이 없었던 전기장치 튜닝승인 기준을 신설하고, 이륜자동차 튜닝에 대한 세부기준도 마련하겠습니다.
- 또한, 대형자동차 튜닝 시 필요한 안전성 시험을 국내에서도 가능하게 하고, 기술발전에 따른 미래 튜닝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튜닝카 성능·안전 시험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.
- 아울러, 튜닝품질 향상,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튜닝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도 금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.

< 3. 튜닝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>

△ 튜닝 문화저변 확대, 올바른 튜닝 유도

- 지금까지는 우리사회가 튜닝을 일부 계층에서만 선호하는 특수한 문화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.
 - 이에, 튜닝경진대회·우수 튜닝업체 인증 등을 통해 튜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, 건전한 튜닝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.

	<p>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김영건 사무관(☎ 044-201-3840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
---	--

참고

적법한 튜닝과 불법 튜닝 사례

구조·장치·부착물		올바른 튜닝의 사례	불법 튜닝의 사례
① 구조 변경	길이	 제원허용 범위내 연결장치 장착	 제원허용 초과하는 차체 길이 증가
	너비	 FRP재질 스포일러(안전기준 적합 제원허용범위내)	 철재 스포일러(안전기준위반 제원허용범위 초과)
	높이	 물품적재장치 변경(높이 허용범위 내)	 가변형 윙바디(높이 허용 기준 초과)
② 장치 변경	주행장치	 타이어 변경에 따른 타이어 돌출 시 타이어를 덮는 구조의 너비변경 튜닝	 타이어 변경에 따른 타이어 돌출 시 타이어를 덮는 구조를 갖추지 않은 튜닝
	등화장치	 할로겐 전조등 변경	 HID등 설치(auto-leveling이 없는 HID등)
	물품적재장치	 내장탑 설치	 내장탑 내부 캠핑용 설비 설치
소음방지장치	 소음방지장치 추가 설치	 소음방지장치 방향(90도) 변경	
	③ 부착물	 루프캐리어 설치(경미한 튜닝)	 불법 광고물 부착, 높이 허용범위 초과